

**치협·정부 공동 '대복지원 특별위' 구성
 통일부·청와대 직접 관여 활성화 노력**

치협과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치과계와 교류를 위한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통일부는 치협이 5월 치협 종합 학술대회 때 북한 학자 초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3월 5일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통일부 관계자, WH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모든 치과 관련 대북 지원 사업은 WHO 북한 대표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존 물질적 지원만의 대북 교류 형식에서 탈피, 학술 및 인적교류를 중점 추진기로 향후 위원회 사업성격을 규정했다.

학술 및 인적 교류는 구체적으로 ▲국내외 치과 의료도서 지원 ▲북한 치과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북한 학자와 의료기기 기술자 초청교육 등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특히 정 협회장이 특위 대표 자격으로 오는 4월초 북한을 방문, 북한 당국자와 교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방북 기간에는 WHO 북한 대표부 담당관

인 소렌슨(노르웨이)박사의 협조아래 활동이 이뤄지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5월 예정인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인적 학술교류 차원에서 북한 치의학자 초청과 관련,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통일부 등 정부관계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 협회장은 2월 11일 윤홍렬 FDI회장, 조건식 통일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WHO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FDI회장은 북한 치과의료지원사업은 FDI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치협의 학술교류의 원칙에 적극 찬성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난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국민을 위해 이동 진료차를 운용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측에서 이동 진료차를 지원하고 치협이 직접 대북한주민진료를 활동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대북 구강보건사업에 정부가 나서게 돼 예측할 수 없지만 치협 대북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고 밝혔다.

**"지도치의제 원-원 방안 마련"
 5월중 해결책 마련 첫 실무회의 갖기로**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는 지도치과 의사제도와 관련한 양 단체 실무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 섭외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3월 19일 치기협과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 실무팀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실리를 추구할 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김재영 섭외담당 부회장을 비롯, 마경화 섭외이사, 김세영 섭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부회장, 김춘길 부회장, 주희중 법제이사, 강병균 기공이사, 김장희 기자재이사 등이 참석, 논의를 가졌다.

양 단체는 5월 중 각 실무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갖기로

하고, 실무팀 명칭을 포함해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재영 섭외담당 부회장은 "지도치의제와 관련해 양 단체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서로의 권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경화 섭외이사는 "양 단체 실무팀이 구성되면 지도치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송준관 치기협 부회장은 "치기협도 양 단체가 화합속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향후 실무팀을 통한 지혜로운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조인력 업무범위 확대 치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가능토록 / 치협 구발특위 집중 논의

치협이 위생사의 경우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구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토록 보조인력 업무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치협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김광식 위원장, 송요선 간사, 조영식 보임, 최동훈 법제, 손정열 기획, 우종윤 자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보조인력 역할범위 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 업무확대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수집이 완료된 만큼,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위원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치과위생사의 경우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파노라마와 세팔로 촬영 등을 할 수 없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3년 교육을 받은 이들

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도 진료준비, 재료혼합, 의료기구 소독, 청소 등 단순 보조 업무에 머물고 있어 결국 직업만족도 저하를 야기, 개원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구내 엑스레이 촬영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의료선진국의 치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강 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국내의 경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와 한의계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인 혈액주사를 놓고 부항 뜸을 뜨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치과도 치과의사 업무로 규정된 방사선업무 분야의 보조인력 역할증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치과계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구강보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는 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구강검진비 행정비용 220원 증액 치협 요구 수용...최종 2900원으로 확정

치협이 2004년도 구강검진비에 행정비용 220원 추가반영을 최종 관철 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2680원이던 구강검진비가 올해는 2900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기존 구강검진비에 구강검진 시 검진결과 입력과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220원 추가 반영을 포함한 200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최종 확정 공고했다.

당초 복지부는 치협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비용 150원을 추가 반영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입안 예고했으나 이후 치협의 지속적인 증액요구 건의를 확대 반영, 70원을 추가로 증액한 220원을 최종 행정비용으로 결정했다.

치협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근로자 구강검진비용에 검진결과 통보서 구입비용 및 디스켓 구입비용, 발송 비용 등 행정비용까지 치과위원회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구강검진비 책정시 '행정비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이번 추가반영을 이끌어 냈다.

치협은 구강검진비가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강 검진비용은 지난 95년 1000원, 96년 1500원, 97년 2000원, 99년 2200원, 2003년 2680원, 2004년 2900원 등 매년 치협의 강력 건의로 꾸준한 상승선을 타고 있다.